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10일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년 6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(안 제1조)
 -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 -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 -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정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,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)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)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)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정함(안 제5조)

3) 검토 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
-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한 사항 및 계급별 여비의 지급 기준, 그리고 공무로 인한 국내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기준과 여비 부정 수령 사유와 부정 수령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해당 제정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 운영 및 계속성을 유지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일조함은 물론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